
제1부

언론조정현황



제1부

언론조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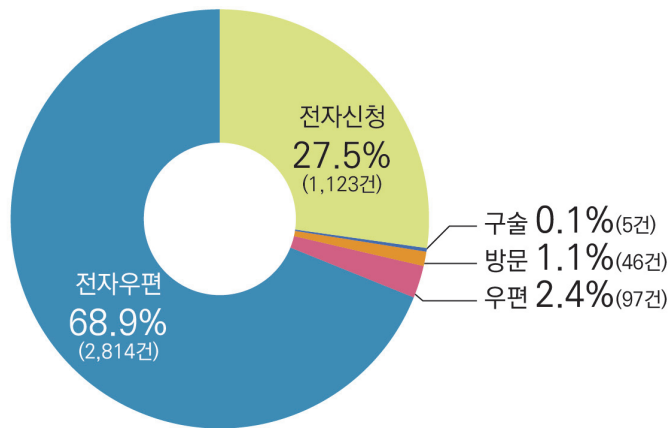
1. 접수 유형별 현황

위원회는 2023년 4,085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¹⁾.

조정신청은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접수가 2,814건(68.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전자신청시스템을 통한 신청(전자신청) 1,123건(27.5%), 우편 97건(2.4%), 방문 46건(1.1%), 구술²⁾ 5건(0.1%) 순이었다.

3,937건(96.4%)의 조정신청이 전자우편, 전자신청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접수되었으며, 방문, 구술과 같이 위원회 내방을 통한 신청은 51건(1.2%)이었다.

표 1 접수 유형별 조정사건 현황



2.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전체 4,085건의 조정사건 중 3,114건(76.2%)은 서울중재부(8개 중재부), 971건(23.8%)은 지역중재부(10개 중재부)가 접수·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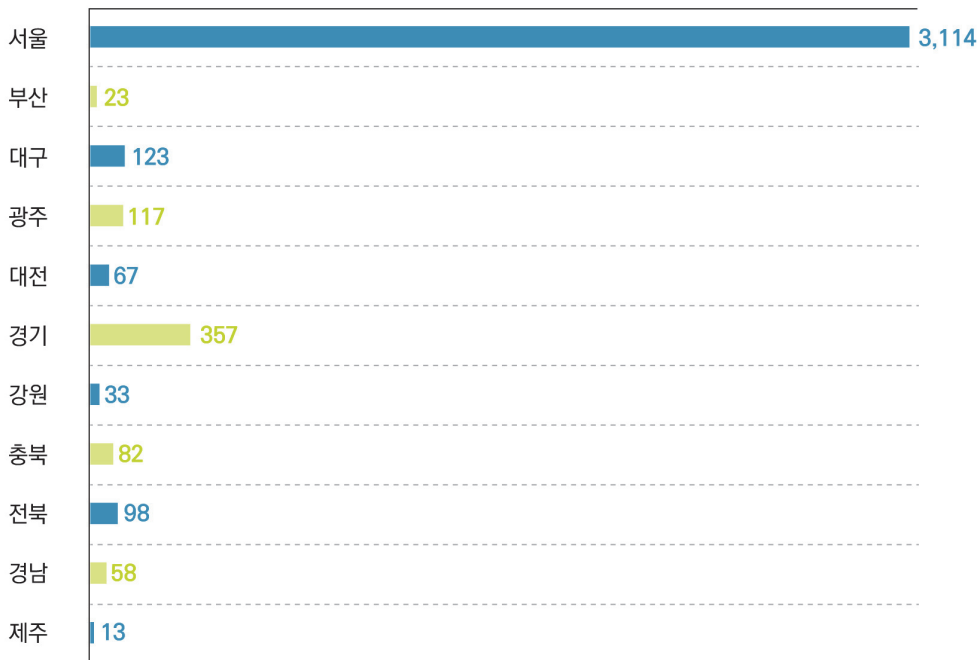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중재부는 평균 389건(9.5%)의 조정사건을 접수·처

1) 2023년 접수된 중재사건은 없었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에 따른 구술 신청은 신청인이 위원회에 내방하여 조정신청의 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면 업무담당자가 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접수하는 방식이다.

리하였으며, 지역중재부는 경기중재부 357건(8.7%), 대구중재부 123건(3.0%), 광주중재부 117건(2.9%), 전북중재부 98건(2.4%), 충북중재부 82건(2.0%), 대전중재부 67건(1.6%), 경남중재부 58건(1.4%), 강원중재부 33건(0.8%), 부산중재부 23건(0.6%), 제주중재부 13건(0.3%) 접수·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중재부별 조정사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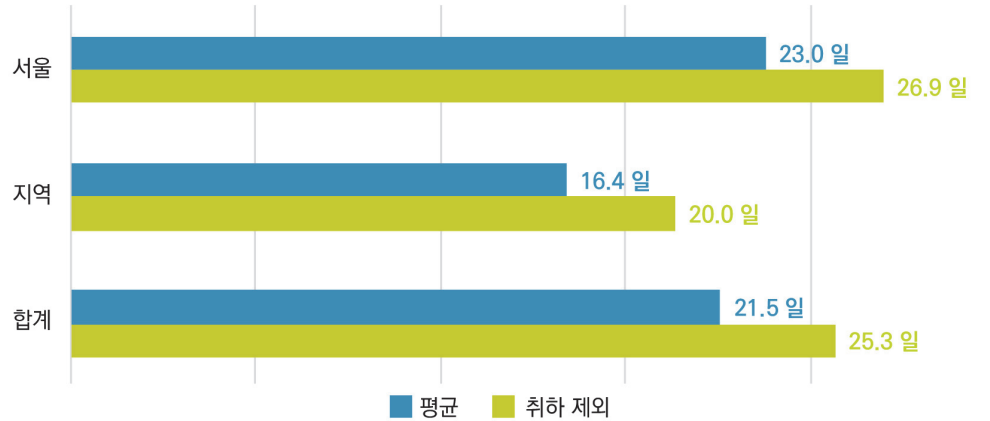
3. 조정사건 처리기간

2023년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³⁾은 21.5일이었다. 서울중재부의 평균 처리기간은 23일, 지역중재부의 평균 처리기간은 16.4일로 서울과 지역중재부의 평균 처리기간 차이는 6.6일이었다.

신청인이 심리 전 피해구제, 단순변심 등의 이유로 취하한 사건을 제외하고 심리가 개최된 조정사건만을 대상으로 한 평균 처리기간은 25.3일로 전체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보다 3.8일이 더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부별로는 서울중재부 26.9일, 지역중재부 20일로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보다 서울은 3.9일, 지역은 3.6일이 더 소요되었다.

3) 조정사건 처리기간은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종결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의미한다.

표 3 조정사건 평균 처리기간



4.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조정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1,943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손해배상청구 1,312건(32.1%), 반론보도청구 731건(17.9%), 추후보도청구 99건(2.4%) 순이었다.

전체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⁴⁾은 74.1%이었다. 청구권별로는 추후보도청구 피해구제율이 94.8%로 가장 높았고, 정정보도청구 74.1%, 반론보도청구 74.0%, 손해배상청구 72.8% 순을 보였다.

표 4 청구권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청구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정정	1,943	796	34	19(1)	382(8)	74	31	523	84	74.1
반론	731	317	12	5(1)	138(4)	10	6	195	48	74.0
추후	99	10			3	5	17	63	1	94.8
손배	1,312	476	15	10(1)	270(8)	56	59	371	55	72.8
계	4,085	1,599	61	34(3)	793(20)	145	113	1,152	188	74.1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등을 통해 피해가 구제된 건수

※ 피해구제율 = $\frac{\text{조정성립} + \text{직권조정결정(동의)} + \text{취하(구제)} + \text{그 외 피해구제건}}{\text{전체 조정청구건수} - (\text{기각} + \text{각하})} \times 100$

4)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조율을 우선하는 조정의 특성상 신청인의 본래 청구와 다른 보도 형태 등으로 합의되는 때도 있으며, 이 경우도 피해가 구제된 것으로 본다.

5. 병합청구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병합청구⁵⁾를 하나의 조정신청으로 간주한 신청건 기준으로는 2,316건이 접수·처리 된 것으로 집계됐다.

병합청구를 포함한 청구 유형별로 신청건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손해배상 병합청구가 698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정정보도 단독청구 666건(28.8%),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병합청구 408건(17.6%), 정정보도·반론보도 병합청구 170건(7.3%), 손해배상 단독청구 123건(5.3%) 등의 순을 나타냈다.

신청건 기준 전체 피해구제율은 75.5%로 청구권 기준 피해구제율 74.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병합청구 유형별로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추후보도 단독청구(50건)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 병합청구(1건)가 100%의 피해구제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추후보도·손해배상 병합청구(48건) 86.7%, 손해배상 단독청구(123건) 84.5%, 정정보도·반론보도 병합청구(170건) 81.8% 등의 순이었다.

표 5 병합청구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병합 유형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정정	666	298	12	7	107	20	2	182	38	76.4
반론	118	39			19	3	4	50	3	80.2
추후	50	2				3	1	44		100.0
손배	123	46	1		11		13	46	6	84.5
정정·반론	170	88	8	2	21			43	8	81.8
정정·손배	698	232	10	7	158(4)	47	28	205	11	72.4
정정·반론·손배	408	178	4	3(1)	96(4)	7	1	92	27	69.8
정정·반론·추후·손배	1							1		100.0
반론·손배	34	12			2		1	9	10	63.6
추후·손배	48	8			3	2	16	18	1	86.7
계	2,316	903	35	19(1)	417(8)	82	66	690	104	75.5

※ ()안의 숫자는 직권조정결정(이의) 또는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료되었으나,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등을 통해 피해가 구제된 건수

※ 피해구제율 = $\frac{\text{조정성립} + \text{직권조정결정(동의)} + \text{취하(구제)} + \text{그 외 피해구제건}}{\text{전체 조정신청건수} - (\text{기각} + \text{각하})} \times 100$

5) 신청인은 조정신청 시 복수의 청구를 함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청구는 병합되어 처리된다.

6.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가. 개요

조정사건을 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청 주체가 개인인 조정사건이 2,225건(54.5%), 단체인 조정사건은 1,860건(45.5%)이었다. 피해구제율은 개인 신청 조정사건 72.5%, 단체 신청 조정사건 75.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을 다시 종결 형태로 분류하면, 개인 신청 조정사건의 경우 조정성립으로 종결된 사례가 773건(32.9%)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 689건(31.0%), 조정불성립결정 470건(21.1%)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 689건의 취하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인터넷 상에 원 조정대상기사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열람차단이 이뤄진 경우가 261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154건(22.4%), 기사수정 130건(18.9%), 일부 열람차단 57건(8.3%) 등의 순이었다.

단체 신청 조정사건의 종결 형태 역시 조정성립이 866건(46.6%)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 463건(24.9%), 조정불성립결정 323건(17.4%) 등 순이었다. 피해구제로 취하된 463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피해구제보도문 게재로 인한 취하가 171건(36.9%)으로 가장 많았고, 열람차단 113건(24.4%), 기사수정 88건(19.0%) 등의 순이었다.

표 6 신청인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신청인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개 인	2,225	733	28	19(3)	470(18)	114	81	689	91	72.5
단 체	1,860	866	33	15	323(2)	31	32	463	97	75.9
계	4,085	1,599	61	34(3)	793(20)	145	113	1,152	188	74.1

나. 개인 직업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개인 신청 조정사건 2,225건을 신청인 직업별로 살펴보면, 정치인 신청 조정사건이 414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사업가가 407건(18.3%)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회사원 337건(15.1%), 언론인 176건(7.9%), 연예인 128건(5.8%)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업을 밝히지 않았거나 직업 분류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로 분류된 건은 217건(9.8%)이었다.

피해구제율은 신청인이 학생인 경우가 96.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문직 종사자 92.2%, 개인사업가 86.8%, 회사원과 종교인이 각 86.7%, 교육자 85.1% 순으로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

다.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직업군은 연예인이었는데, 조정사건 128건 중 105건(82.0%)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다만 128건 중 동일인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이 111건이며, 해당 사건 중 102건이 조정불성립결정으로 종결된 것이 전체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개인 신청 조정사건 중 공인이 신청한 조정사건은 490건(22.0%), 일반인이 신청한 사건은 1,735건(78.0%)이었다. 피해구제율은 공인이 62.2%, 일반인은 75.7%로 일반인의 피해구제율이 13.5%p 높게 나타났다.

표 7 개인 직업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개인 신청인 직업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정치인	414	139	8	6	142	1		105	13	61.0
공공기관장	62	16			14(12)			17	15	72.6
고위공무원	14	7			2				5	50.0
공무원	83	25			29			24	5	59.0
전문직 종사자	103	87	1		7			7	1	92.2
문화예술인	21	5			9		1	5	1	50.0
종교인	15	6	4		2			3		86.7
회사원	337	142			32(6)	4	32	113	14	86.7
언론인	176	32			22	74		45	3	75.5
교육자	78	40			9	4		23	2	85.1
개인사업가	407	103	7	4	34	6	46	198	9	86.8
연예인	128	13			105			8	2	16.4
학생	63	11			2	2		48		96.7
시민활동가	53	20			18	1		12	2	61.5
조합대표 또는 협회장	54	27		6	7			5	9	59.3
기타	217	60	8	3(3)	36	22	2	76	10	76.2
계	2,225	733	28	19(3)	470(18)	114	81	689	91	72.5

※ 정치인은 국회의원, 정당정치인, 기초·광역단체장 및 의원, 고위공무원은 3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작성

표 8 공인 및 일반인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공인 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공 인	490	162	8	6	158(12)	1		122	33	62.2
일 반 인	1,735	571	20	13(3)	312(6)	113	81	567	58	75.7
계	2,225	733	28	19(3)	470(18)	114	81	689	91	72.5

※ 공인은 개인 직업별 분류 중 정치인, 공공기관장,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다. 개인 연령대별⁶⁾ 조정사건 처리결과

개인이 신청한 조정사건 2,225건을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신청인 연령이 50세에서 59세 이하에 해당하는 조정사건이 711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60세에서 69세 이하 607건(27.3%), 40세에서 49세 이하 512건(23.0%), 30세에서 39세 이하 203건(9.1%)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율은 신청인의 연령이 19세 이하인 경우가 96.1%로 가장 높았으며, 20세에서 29세 이하 84.5%, 60세에서 69세 이하 79.6%, 30세에서 39세 이하 78.5%, 70세 이상 74.5% 등의 순으로 높았다.

표 9 개인 연령대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개인 신청인 연령대 분류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19세 이하	51	11			2			38		96.1
20세~29세	88	31	1		8	4		39	5	84.5
30세~39세	203	76	1		24	8		76	18	78.5
40세~49세	512	146			103	78	42	139	4	72.7
50세~59세	711	250	8		231	19	37	138	28	60.5
60세~69세	607	211	14	17(3)	92(18)	5		233	35	79.6
70세 이상	53	8	4	2	10		2	26	1	74.5
계	2,225	733	28	19(3)	470(18)	114	81	689	91	72.5

6) 연령대는 신청인의 생년에 기반하여 만연령으로 구분하였다.

라. 단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신청인이 단체인 조정사건을 단체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일반기업체가 신청한 조정사건이 757건(40.7%)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조합 및 협회 268건(14.4%), 지방자치단체 154건(8.3%), 언론사 141건(7.6%)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피해구제율은 신청인이 언론사인 경우가 91.1%로 가장 높았다. 특정 단체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항목을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 79.2%, 일반기업체 78.5%, 노동조합 74.8%, 종교단체와 정당 각 71.1% 순의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표 10 단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단체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국가기관	77	41	4		23			9		70.1
지방자치단체	154	72	4	7	21			46	4	79.2
공공단체	101	31			22			30	18	60.4
정당	38	16			9			11	2	71.1
조합 및 협회	268	135			74			53	6	70.1
종교단체	46	18	8		10	1		6	3	71.1
일반기업체	757	354	7	6	95(2)	18	32	192	53	78.5
언론사	141	64	1		11	6		58	1	91.1
교육기관	48	9	3		19			11	6	47.9
노동조합	105	62			22	2		15	4	74.8
기타	125	64	6	2	17	4		32		84.3
계	1,860	866	33	15	323(2)	31	32	463	97	75.9

7.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가. 개요

피신청인 매체 유형별로 조정사건을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이 2,491건(61.0%)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포털과 방송사 닷컴 등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498건(12.2%), 신문 487건(11.9%), 방송 345건(8.4%), 뉴스통신 218건(5.3%) 등의 순이었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을 대상으로 한 조정사건은 3,207건(78.5%)으로 2017년 이후 꾸준히 전체 조정사건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피신청인

매체 유형 중 가장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인 매체는 인터넷뉴스서비스(79.7%)이었으며, 다음은 뉴스통신 77.0%, 잡지 75.0% 등의 순이었다.

표 11 매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매체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신 문	487	246	6	3	124(6)	9	3	73	23	69.7
방 송	345	175	12	3	77(2)	11	3	50	14	72.2
잡 지	8	2	2		2			2		75.0
뉴스통신	218	69	3	2	30	13	9	79	13	77.0
인터넷신문	2,491	894	26	25(3)	468(8)	66	86	804	122	74.2
인터넷뉴스서비스	498	212	11	1	80(4)	34	10	135	15	79.7
기 타	38	1	1		12	12	2	9	1	45.8
계	4,085	1,599	61	34(3)	793(20)	145	113	1,152	188	74.1

나. 인터넷 기반 매체 열람차단 피해구제 현황

인터넷 기반 매체(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를 대상으로 한 3,207건의 조정 사건 중 피해구제가 된 사례는 2,248건이었다. 피해구제 방법 중 인터넷 상에서 원 조정대상 기사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열람차단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합의한 사례는 471건(21.0%)으로 확인됐다.

표 12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조정사건 중 열람차단으로 구제된 사건 현황

(2023. 1. 1. ~ 2023. 12. 31.)

인터넷 매체 대상 청구건수 [A]	기각, 각하 건수 [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인터넷 매체 대상 피해구제 건수 [C]	열람차단으로 구제된 건수 [D]	비율 [D]/[C]
3,207	218	2,989	2,248	471	21.0%

다.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 처리결과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 사례는 327건이었다. 이 중 유튜브(Youtube) 등 동영상 플랫폼 채널을 조정대상 매체로 직접 지정한 조정사건은 35건이었고, 나머지 292건은 인터넷신문, 방송 등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면서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등을 함께 요구한 사례였다.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 방송 등 언론사 본 매체에 게재된

보도를 자사의 동영상 플랫폼에도 함께 게재한 원 보도 매개 유형이 299건(91.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용으로 만들어진 자체 제작 유형은 28건(8.6%)이었다.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의 전체 피해구제율은 67.7%이었다. 동영상 플랫폼 채널을 조정대상 매체로 직접 지정한 경우의 피해구제율은 43.5%, 인터넷신문, 방송 등에 대해 조정을 신청하면서 동영상 플랫폼 채널에 게재된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함께 요구한 경우의 피해구제율은 69.8%로 나타났다. 콘텐츠 유형별로는 원 보도 매개의 경우 70.5%, 자체 제작의 경우 37.5%의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표 13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 관련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대상 매체	콘텐츠 유형	청구 건수	처리 결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동영상 플랫폼 채널 대상 직접 신청	원 보도 매개	19		1		2	12		3	1	57.1
	자체 제작	16	1			10			5		37.5
	소 계	35	1	1		12	12		8	1	43.5
타 매체 신청 시 부가 신청	원 보도 매개	280	133	16		53	19	4	33	22	70.8
	자체 제작	12				5	4		3		37.5
	소 계	292	133	16		58	23	4	36	22	69.8
합 계		327	134	17		70	35	4	44	23	67.7

8.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보면, 명예훼손이 4,042건(98.9%)으로 조정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초상권·음성권·성명권·사생활 침해 등 기타 인격권 침해는 28건(0.7%), 재산상 손해는 4건(0.1%)이었다.

명예훼손 조정사건 피해구제율은 74.1%이었으며, 이를 구체적인 결과로 살펴보면 조정성립이 1,585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구제로 인한 취하 1,141건(28.2%), 조정불성립결정 788건(19.5%) 등의 순이었다. 기타 인격권 중 초상권 침해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81.0%이었고, 성명권과 사생활 침해 사례가 각 33.3%의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음성권 침해로 인해 조정이 신청된 1건은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구제율 100%이었다. 재산상 손해로 인한 조정사건 4건과 기타 침해로 인한 조정사건 11건 역시 조정성립 등으로 100% 피해가 구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표 14 침해 유형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매체 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구제	미구제	
명 예 훼손	4,042	1,585	59	34(3)	788(20)	140	110	1,141	185	74.1
초상권 침해	21	8	1		2			8	2	81.0
음성권 침해	1	1								100.0
성명권 침해	3				1			1	1	33.3
사생활 침해	3		1		2					33.3
재산상 손해	4	2				2				100.0
기 타	11	3				3	3	2		100.0
계	4,085	1,599	61	34(3)	793(20)	145	113	1,152	188	74.1

※ 침해유형은 중복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통계는 신청인이 주된 침해로 선택한 유형 기준으로 작성

9. 직권조정결정을 통한 조정사건 처리결과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직권조정결정)을 내린 조정사건은 95건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내린 사례는 50건(52.6%), 지역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내린 사례는 45건(47.4%)이었다.

직권조정결정 중 61건(64.2%)이 양 당사자의 동의로 확정되었고, 이의신청이 이루어진 사건은 34건(35.8%)이었다. 이의신청 주체별로 나눠보면, 신청인 이의신청 20건(21.1%), 피신청인 이의신청 4건(4.2%), 양당사자 이의신청 10건(10.5%)으로 나타났다.

표 15 직권조정결정 처리결과

(2023. 1. 1. ~ 2023. 12. 31.)

구분	건수	직권조정결정 처리결과					소계
		동의	이의				
			신청인 이의신청	피신청인 이의신청	양당사자 이의신청		
서울	50	34	10	2	4	16	
지역	45	27	10	2	6	18	
계	95	61	20	4	10	34	

10. 기각 및 각하 사유

기각으로 종결된 조정사건은 145건이었다. 이를 사유별로 나눠보면, 신청인과 조정대상보도 사이의 개별적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각된 사례가 111건(76.6%)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거나 피신청인이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 사례가 12건(8.3%)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그밖에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표명을 대상으로 조정이 신청된 경우와 이미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으로 신청인의 요구가 달성되었다고 판단된 사례가 각 10건(6.9%)이었다. 요구하는 보도문이 지엽말단적이거나 피해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된 사례도 2건(1.4%) 있었다.

각하로 종결된 조정사건은 113건이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신청 가능 기간을 넘겨 접수된 사건이 110건(97.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신청서 미비(3건, 2.7%)로 인한 각하로 파악됐다.

표 16 기각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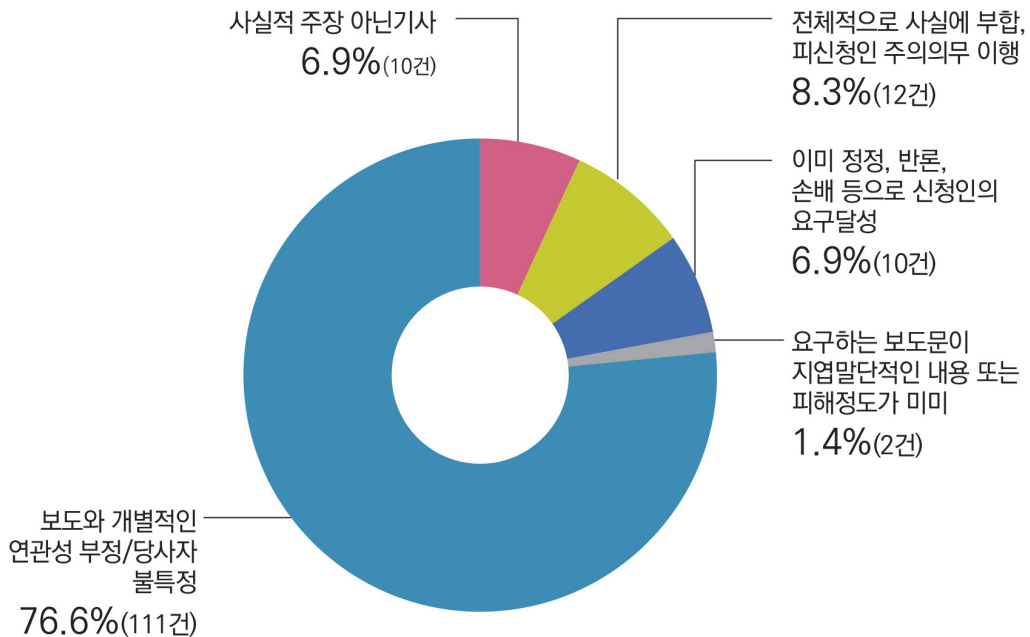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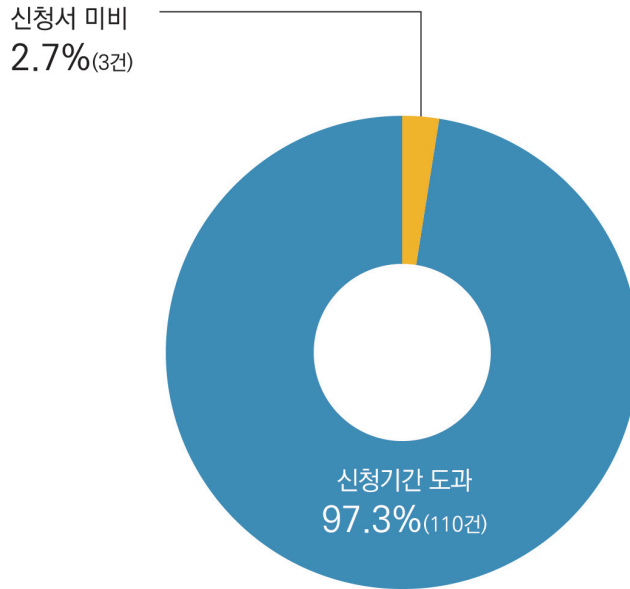


표 17 각하 사유



11. 피해구제보도문의 게재

가. 게재 유형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방송된 사례는 1,752건이었다. 이 중 신문, 방송, 잡지에 보도된 사례는 427건으로 전체 대비 24.4%에 해당하였다. 원 보도 지면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게재·방송된 사례가 365건(8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도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게재·방송한 사례 46건(10.8%), 언론사 자체 정정·반론보도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게재·방송된 사례 9건(2.1%), 기타 방식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진 사례도 7건(1.6%)이 있었는데, 언론사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 또는 해당 영상 다시보기 하단 설명란을 통한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동영상 플랫폼 콘텐츠의 하단 설명란 또는 해당 영상에 고정 댓글을 통한 피해구제보도문 게재 등의 방식이었다.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에 피해구제문이 보도된 사례는 1,325건(75.6%)이었다. 인터넷 기반 매체들의 경우 별도 피해구제보도문과 함께 원 보도 하단에도 피해구제보도문을 게재한 사례가 753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원 보도 하단에만 피해

구제보도문을 게재한 사례가 324건(24.5%), 피해구제보도문만 별도로 게재한 사례는 248건(18.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피해구제보도문 게재지면(신문, 방송, 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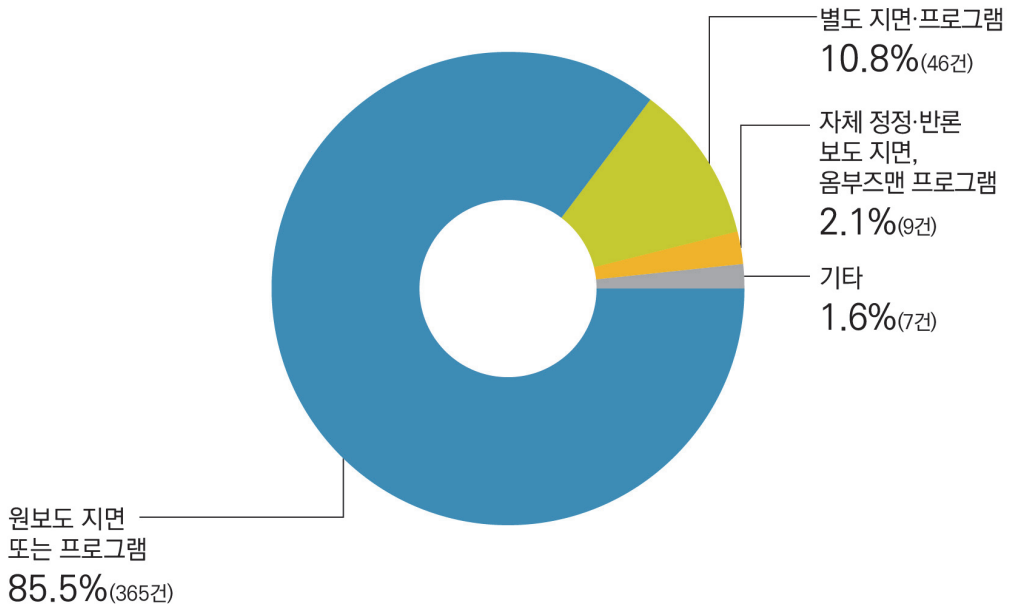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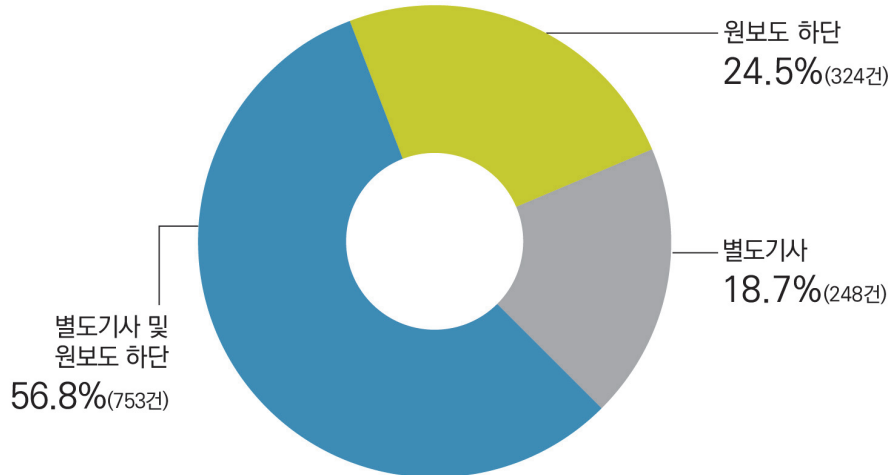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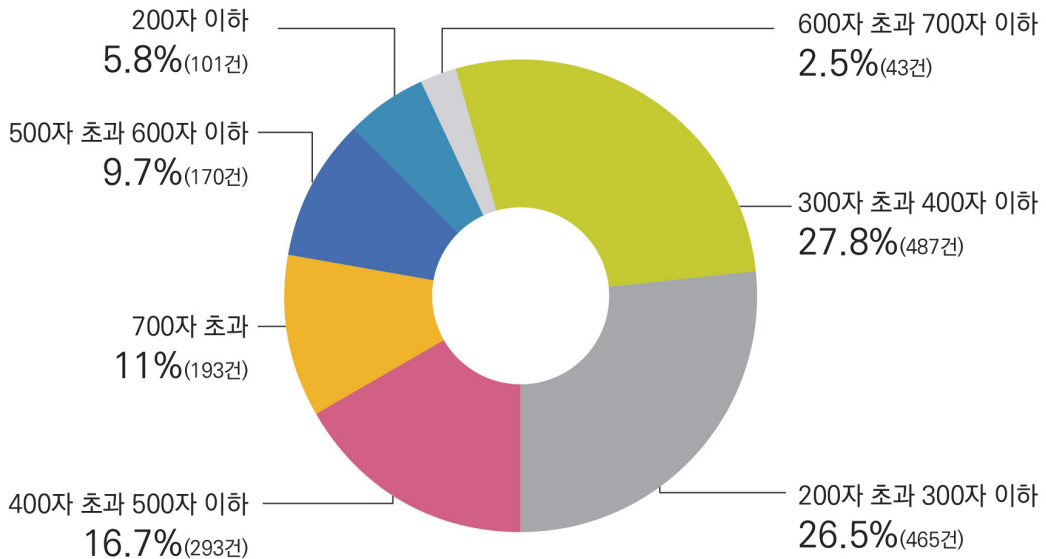
표 19 피해구제보도문 게재방식(뉴스통신, 인터넷신문, IPTV, 인터넷뉴스서비스)



나. 보도문 길이

피해구제보도문이 게재·방송된 1,752건의 보도문 길이를 분석해 본 결과, 보도문의 길이는 주로 200자에서 400자 사이(952건, 54.3%)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300자 초과 400자 이하인 사례가 487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200자 초과 300자 이하 465건(26.5%), 400자 초과 500자 이하 293건(16.7%), 700자 초과 193건(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0 피해구제보도문 길이



12. 손해배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정사건 1,312건 중 금전배상 인용으로 종결된 사건은 28건(2.1%)이었다.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최저 50원부터 최고 2,200억 원까지로 큰 편차를 보였다. 청구액 평균값은 84억 6천만 원, 중앙값은 2천만 원이었다.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등을 통해 인용된 손해배상 금액은 최저 30만 원, 최고 500만 원이었으며, 평균값은 약 160만 원, 중앙값은 100만 원이었다.

손해배상이 인용된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19건(67.9%)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 6건(21.4%), 성명권 침해 2건(7.1%), 음성권 침해 1건(3.6%) 순이었다. 2023년 손해배상 최고액인 500만 원이 지급된 조정사건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초상을 보도한 초상권 침해 사건이었다.

표 21 손해배상청구 금전배상 인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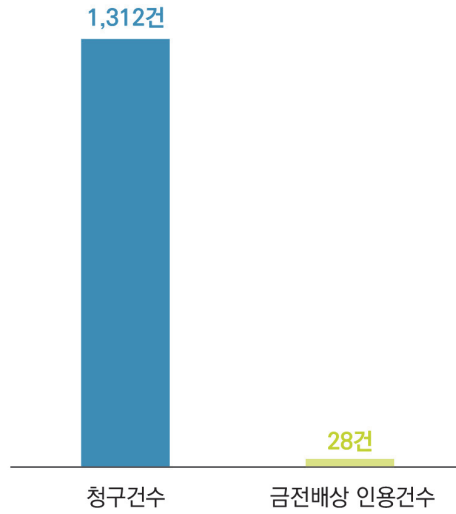


표 22 손해배상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23. 1. 1. ~ 2023. 12. 31. / 단위: 원)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청구액	50	220,000,000,000	8,464,004,574	20,000,000
조정액	300,000	5,000,000	1,660,870	1,000,000

표 23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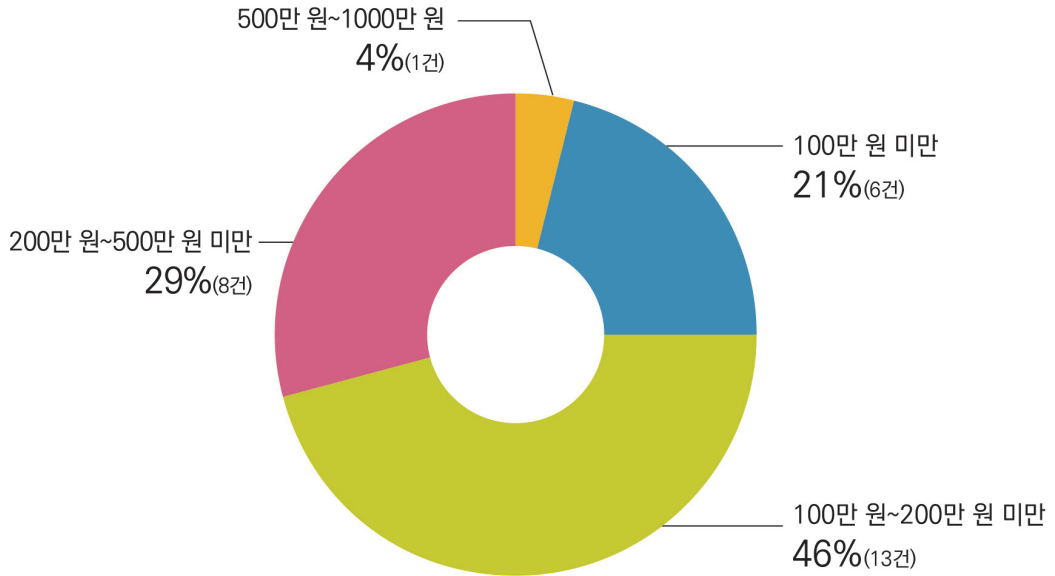


표 24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23. 1. 1. ~ 2023. 12. 31. / 단위: 원)

침해유형	조정액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19	500,000	4,500,000	1,833,333	1,5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6	300,000	5,000,000	1,920,000	1,000,000	300,000
음성권 침해		1	300,000	300,000	300,000	300,000	-
성명권 침해		2	300,000	500,000	400,000	400,000	-